

## 제 11 장 전기통신

### 제 11.1 조 정    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원가지향**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,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으며,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.

**최종이용자**라 함은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최종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하나,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자는 제외된다.

**필수설비**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.

- 가.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, 그리고
- 나.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,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설비

**설비기반사업자**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.

- 가. 대한민국에 대하여는,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
- 나. 싱가포르에 대하여는, 설비기반사업자

**지배적사업자**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(요금 및 공급 관련)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본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.

- 가. 필수 설비의 통제, 또는
- 나.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

**망구성요소**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,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징,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.

**비차별적**이라 함은 동일한 여건 하에서 동종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나 서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.

**공중전기통신전송망**이라 함은 정의된 망 종단점 간의 전기통신을 허용하는 공중전기통신 기반구조를 말한다.

**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**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/또는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를 말한다.

**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**라 함은 일방 당사국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적 혹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, 이에는 전신, 전화, 텔레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고,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실시간 전송한다.

**서비스 공급자**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을 말한다.

**전기통신**이라 함은 모든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. 그리고

**이용자**라 함은 서비스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.

## 제 11.2 조 적용범위<sup>11-1)</sup>

1. 이 장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, 이의 이용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.

---

11-1) 이 장에서 당사국의 의무는 양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.

2.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.

가.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·구축·취득·리스·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. 또는

나. 일반적으로 공중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·구축·취득·리스·운영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, (또는 당사국에게 서비스 공급자를 강제하여 동 행위를 하도록)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

### 제 11.3 조

####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

1.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합리적이고, 비차별적이며, 시의적절하고, 투명한 조건 하에서 자국 영역 내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전용임대회선을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, 이용하는 것을 보장한다.

2.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.

가.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구입 또는 리스 및 부착

나. 리스(전용) 또는 소유 회선의 당사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,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리스 또는 소유 회선과의 상호접속

다. 교환·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

라.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, 그리고

마. 리스(전용)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인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종류의 서비스 공급

3.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,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4.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각 당사국은 메세지의 보안 및 비밀 또는 최종이용자의 사적인 자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나,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혹은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.

5.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,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보장, 또는
- 나.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

6. 당사국이 제5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하여,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
- 나.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요건
- 다.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 승인과 그러한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에의 부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, 또는,
- 라. 통보, 등록 및 면허

#### 제 11.4 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

1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비기반사업자인 자신, 자회사, 계열회사,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동종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·공급·요금, 또는 품질, 그리고
- 나.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의 이용가능성

필요한 경우, 일방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그러한 공급자, 자회사, 계열회사 및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그러한 대우를 평가하여야 한다.

### **경쟁보장장치**

2. 가.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.

- 나. 가호의 목적상 반경쟁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.
  - (1)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
  - (2)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
  - (3)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
  - (4)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가격 설정

### **망 세분화**

3. 가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된 망으로 시의적절하게, 그리고 합리적이고, 투명하며,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

- 나.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분화의 기술적 실현가능성, 관련시장의 경쟁 상태에 기초하여,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망 구성요소를 필요

로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.

### 설비 병설

4. 가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, 그리고 합리적이고, 투명하며,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  
나.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가호에 따른 물리적 설비 병설이 비현실적인 경우,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 지배적사업자가 설비기반사업자와 협력하여 설비병설을 위한 지점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보장한다.  
다.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의 어떠한 영역이 가호 및 나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### 재판매

5. 가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  
나.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 재판매의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.

### 전주·관로·도관

6. 가.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·관로·도관 또는 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
  - (1) 시의적절한 방법. 그리고
  - (2) 합리적이고, 투명하며,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

나. 각 당사국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상태에 근거하여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전주·관로·도관 및 그 밖의 구조물을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

### 번호 이동성

7. 각 당사국은 자국이 지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가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상호접속

8. 가. 일반 조건

#### 상호접속의 보장

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설비기반사업자와 그 밖의 설비기반사업자 또는 서비스기반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을 보장한다.

####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

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.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.

- (1) 비차별적인 조건(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) 및 요금,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,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품질
- (2) 시의적절하게,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,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하지 아니한 망 구성요소 혹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인 요금과 조건들(기술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). 그리고
- (3) 요청이 있을 때,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

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

나.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

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다.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

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.

라.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

(1)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.

(2)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마. 상호접속 분쟁 해결

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된 기간 내에 상호접속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**전용회선의 공급 및 가격책정<sup>11-2)</sup>**

9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전용회선 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, 비차별적이며, 시의적절하고, 투명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보장한다.

**제 11.5 조  
규제기관의 독립**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,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

---

11-2) 본 조항에서의 의무는 전용회선을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다.

2. 각 당사국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1.6 조 보편적 서비스

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, 비차별적이며,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, 각 당사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각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1.7 조 허가절차

1.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,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- 가. 적용되는 허가 기준 및 절차
- 나.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. 그리고
- 다. 허가조건

2. 각 당사국은, 요청이 있을 때,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1.8 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<sup>11-3)</sup>

1. 각 당사국은 주파수·번호·관로·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, 시의적절하며, 투명하고,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.

---

11-3) 양 당사국은 전파의 배분 및 할당, 주파수 관리에 관한 결정이 그 자체만으로 제9.5조, 제10.7조와 불일치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. 따라서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사업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역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. 양 당사국은 기존의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권리를 또한 보유한다.

2.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나,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가 할당 또는 배분한 주파수의 세부적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.

### 제 11.9 조 시 행

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이 이 장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.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재정적 처벌, 시정명령 또는 사업권의 수정·정지 및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.

### 제 11.10 조 국내 통신분쟁의 해결

#### 청구

1.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 장에서 규정한 사안을 다루는 국내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#### 이의신청

2.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, 해당 규제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. 어느 당사국도, 적절한 당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아니하는 한, 이의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근거가 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# 항소

3. 각 당사국은 전기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1.11 조 투 명 성

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통신 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것
- 나.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하여,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.<sup>11-4)</sup> 그리고
- 다.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이 포함된다.
  - (1)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
  - (2)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
  - (3)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,
  - (4) 통보, 허가,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, 면허 요건, 그리고
  - (5)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, 수정,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

### 제 11.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

이 협정에서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이 장은 불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 적용된다.

### 제 11.13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

양 당사국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,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촉진시킨다.

---

11-4) 나.의 의무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.